

광명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

제정 2024. 12. 23 조례 제31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명시의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이버공격·위협”이란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서비스거부(DDoS: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),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·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.
2. “사이버보안 업무”란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광명시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시장의 지도·감독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둔다.

1.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
2. 사이버보안 교육
3. 사이버공격·위협 대응 훈련
4. 자체 진단·점검

광명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

5. 보안관제
6. 사고대응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명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
8.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